

#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발의자 및 발의경과

- 의안번호 : 1090
- 발 의 자 : 한기영 의원(찬성의원 11명)
- 발 의 일 : 2019년 10월 16일
- 회 부 일 : 2019년 10월 22일

### 2. 제안이유

- 난임으로 인한 우울증이 직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난임 직원에 대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난임 진단으로 '난임 시술'을 받은 직원 및 그 배우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서울시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 제14호).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입법예고 (2019. 10. 25. ~ 11. 5) 결과 : 의견 없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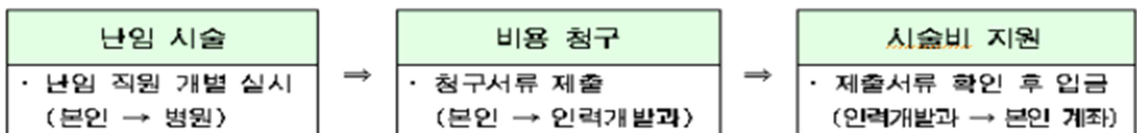
## 5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난임<sup>1)</sup> 진단에 의한 시술비를 지원하여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 규정(안 제7조제14호)을 신설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단,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 1. ~ 13.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

### 추진계획

- 대상 : 서울시 소속 공무원 중 난임 직원 (※ 본인 치료에 한함)
- 기간 : '20. 1월 ~ 12월 (※ 당해연도 시술에 한하여 지원)
- 내용 : 난임 시술비(본인 부담금 일부) 지원, 연 300만원 한도
- 방법 : 시술비 청구서류 제출에 의한 지원금 지급  
- 청구서류 : 시술비 청구서, 난임진단서, 영수증, 본인 계좌사본 등
- 절차



1) 난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.

- 난임으로 인한 우울증이 직원의 정신건강 문제로 야기될 개연성이 있고, 이로 인한 업무 등への 영향을 감안하여 난임직원에 대한 조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도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.
- 행정국에서는 서울시 난임직원에 대한 추정수를 서울시 난임인구 비율을 적용하고, 제도 시행에 따른 실제 난임직원 증가를 감안한 수요조사와 시술비 지원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노력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.

[서울시 난임 직원 추정수](서울시 난임인구 비율 1.36% 적용 추정)

난임직원 추계	연령대별 가임여성 직원수			
	계	20대	30대	40대
28명	2,045	33	810	1,202

※ 가임여성 수는 우리시 직원(사업소 포함) 중 인사 전산상 기혼여성(만20~49세)으로 추출

- 그러나 난임은 여성요인(40%), 남성요인(40%), 부부문제(20%)로 발생하므로 난임직원 및 배우자 대상 난임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난임 치료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- 한편, 난임치료와 관련하여 국가와 서울시 차원에서 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바, 치료비 중복 지급에 따른 이중 수혜 여지는 없는지 여부와 난임 시술비 지원금액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○ 난임 관련 지원 현황

- 국가지원 : 건강보험적용(공단 70% 부담), 국가 난임시술비 지원(50만원 이하)
- 시 지원 : 한의약 난임 치료지원(여성 178만원, 남성 92만원)

참고 : 난임 시술 종류별 1건당 비용 지원 현황

(단위 : 만원)

시술 종류	총 비용	건강보험 적용		국가 난임시술비 지원 (중위소득 180% 이하)		
		공단부담 (70%)	본인부담 (30%)	국가지원금	본인부담금	
체외수정	신선배아	359	229	130	47	83
	동결배아	130	66	64	40	24
인공수정	70	45	25	20	5	

▶ 건강보험적용 기준 : 나이제한x, 시술(신선배아 7회, 동결배아 5회, 인공수정 5회)

- 또한, 공무원의 복지증진제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활용되는 만큼 그 책임성과 책무성이 요구된다는 점, 국가 및 자치구와의 복리후생 수준의 형평성, 복지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
전문위원	김태한	입법조사관	김정덕
------	-----	-------	-----